

서울특별시의회
제330회 임시회

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제 안 설 명



2025. 4. 21.

서울특별시의회
김기덕 의원 (더불어민주당, 마포4)

□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한

「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
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,

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4조에서 규정하는
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
공동주택(이하 ‘소규모 공동주택’)에 있어

최근 재난 및 재해 우려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
각종 문제의 대응과 주민 안전 등을 도모하고자
기존 조례의 일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.

□ 특히,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에 있어,

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공동체 사업지원을 위한,

공동주택단지의 주민갈등해소 프로그램과

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여,

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.

- 이에 안 제6조의 경우,
공동체 활성화에 있어, 단지 내 주민갈등해소 프로그램 및
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조항을
신설하고자 합니다.

- 이를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공동체를 위한,
공동주택단지의 주민 갈등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
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한
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
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,

-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
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